

의안번호	제165호
의결연월일	2004. 6. 29

환경기초시설(예산·덕산)운영·관리업무민간위탁 변경동의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. 6. 16. 예산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4. 6. 16.

다. 상정일자 : 2004. 6. 22.

제115회 예산군의회(정례회)

제1차 사회산업위원회

2. 제안설명요지(상하수도사업소장 : 김성재)

가. 제안이유

- 예산하수처리장 운영·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한 2000. 6. 15일 군의회 승인 받아 민간위탁 시행중에 있으나
- 2004. 8. 12일 덕산하수처리장이 완공됨에 따라 민간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인력과 예산 절감함은 물론 행정능률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의회의 동경 동의를 얻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위탁대상시설 변경 현황

구 분	당 초 (예산하수처리장)	변 경 (예산·덕산하수처리장)	증 (덕산하수처리장)	비 고
시설용량 (m ³ /일)	22,000	25,200	3,200	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박인용)

- 본 동의안은 덕산하수처리장이 금년 8월 12일 준공됨에 따라 운영·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예산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,
- 지난 2000년 6월 15일 예산하수처리장의 환경기초시설 운영·관리업무 민간위탁 승인시 관련 규정들을 심도있게 검토가 이루어져 덕산하수장에 대한 관련 규정은 생략하겠습니다.
- 다만, 수탁기관 선정방법에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기술 우위 업체순의로 협상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법을 비교 검토하는 방법이 있으나, 비용의 절감 효과가 최대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·답변요지

- 생 략

5. 토 론 요 지

- 없 음

6. 심 사 결 과

-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